

# 2023년도 「벤처기업 육성자금」 운용계획

- ❖ 기술력은 우수하나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 기술평가보증으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벤처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
## 1 추진 방향

- 기술력은 우수하나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 기술평가보증으로 자금조달 기회 제공
- 벤처기업의 기술력과 사업성을 전문으로 평가하는 기술보증기금 평가의뢰 결과 기술보증기금 보증지원 가능 금액만큼 융자지원
- 벤처기업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성장자금 확보로 기업경쟁력 강화

## 2 2023년도 자금 운용 계획

- 용자규모 : 100억원 (중소기업육성자금)
- 용자대상
  - 『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』에서 정한 벤처기업 또는 예비벤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
  - 벤처기업집적시설/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입주기업
  - 경상북도에 소재한 테크노파크/창업보육센터/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기업
  - 경상북도가 지정한 스타트업 혁신대상 기업
  - 경상북도가 지정한 G-STAR Dreamers 선정 기업
  - 경북하이테크빌리지 ·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· 환동해산업연구원 구미전자정보기술원 ·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·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· 포항체인지업그라운드 입주기업

## □ 용자범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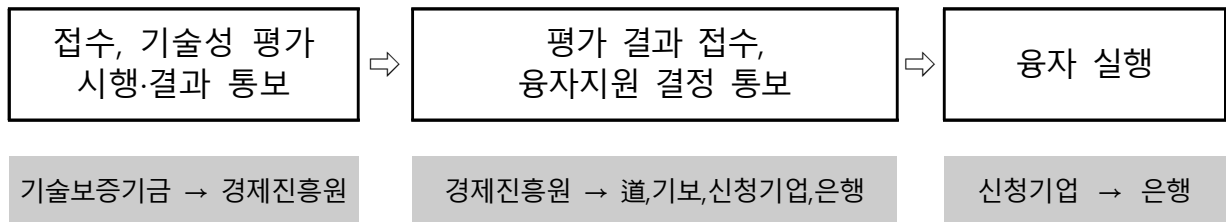
- 시설자금 :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, 사업장 건축 및 확보자금 등 (매입, 경·공매 등)
- 운전자금 : 원부자재 구입비, 인건비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

## □ 용자조건

- 대출금리 : 1% (변동금리)
  - 대출기간 : 5년 (2년 거치, 3년 균분 상환)
  - 대출한도 : (일반) 2억 / (우대) 3억 \* 시설, 운전 구분 없음
- \* (우대기업) 경상북도가 지정한 스타트업 혁신대상기업, G-STAR Dreamers 선정 기업  
\* 타보증기관(기술보증기금 외)과 중복보증 불가

최근 2년간(2021~2022) 벤처기업 육성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既 추천금액을 합산하여 최대 3억원 이내 신청 가능 (대출 미실행분 포함)

## □ 용자 절차 (3개월 정도 소요)



- 신청 접수 [기술보증기금 7개 지점(포항,구미,경산,대구,대구북,대구서,대구달성)]

- ◇ 벤처기업 육성자금 용자신청서 1부
- ◇ 신용보증 사전심사 신청서 1부
- ◇ 벤처기업의 「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」 관련 협약서 1부
- ◇ 기술사업계획서 2부
- ◇ 기업정보의 제공·활용 및 이용 동의서 1부
- ◇ 사업자등록증 1부
- ◇ 법인등기부등본 1부
- ◇ 용자지원 대상(일반/우대) 증빙 서류 1부

\* 신청서류 서식은 경상북도육성자금시스템([www.gfund.kr](http://www.gfund.kr)) 및 기술보증기금 ([www.kibo.or.kr](http://www.kibo.or.kr)) 확인

○ 기술성 평가 [기술보증기금] : 기술성, 수익성, 시장성, 사업타당성 등 평가

항 목	내 용	
경영주의 기술능력	- 재무상황 - 대표자 경험수준	- 대표자 경영능력 - 사업운영(또는 창업준비) 상태
기술수준	- 기술의 난이도 - 기술경쟁력 - 기술내용 및 활용범위	- 기술의 완성도 - 대체기술 출현가능성 등
기술(제품)의 시장성	- 시장규모 - 경쟁상황	- 시장성격 - 가격경쟁력
기술(제품)의 수익성	- 수익전망 - 추진일정의 적정성	-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 - 파급효과
종합의견	- 각 항목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의견	
평가결과	- 사업성공가능성	- 지원금액, 평점 및 등급

\* 평가요금 : 1건당 20만원(평가 후 신청기업이 기보 계좌로 납부)

○ 용자지원 결정 [경제진흥원] \*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(지연 시 기업 통보)

□ 접수 시기 : 2023. 1. 1 ~ 자금 소진 시

□ 대출취급 은행

○ 경남, 국민, 기업, 농협, 대구, 부산, 산업, 신한, 우리, KEB하나은행

\* 대출취급 기한 : 용자지원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

(단, **2023. 12. 31.까지** 반드시 대출 완료하여야 함)

□ 사후 관리

○ 변경신고(기업→ 경제진흥원, 대출취급은행) : 대표자 성명, 상호 및 소재지, 주 생산업종의 변경이 있는 때

- ◇ 변경신고서 및 변경사유서 1부
- ◇ 사업자등록증 사본
- ◇ 법인등기부등본(법인인 경우)
- ◇ 기타 변경 신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

- 변경승인 신청(기업→ 경제진흥원) : 지원시설의 변경(시설명, 제작 및 납품업체, 규격, 수량, 설치장소 등), 용자취급은행의 변경이 있는 때

- ◇ 변경승인 신청서 및 변경사유서 1부
- ◇ 변경증빙서류
- ◇ 기타 변경 신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

- 완료보고서 제출(기업→ 경제진흥원) : 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

- ◇ 완료보고서 1부
- ◇ 세금계산서, 시설사진 등

\* 완료보고서에 의하여 사업추진 내용, 자금집행 상황 등 사후관리 실태조사 실시

- 현지 실사 및 조사(경제진흥원→ 기업) : 연 2회
  - 자금 추천내용과 실제 사용의 적합성 여부, 지원시설의 가동 및 적정 여부, 자금이용 효과, 목적 외 사용여부 등 현지 확인
  - 휴·폐업 조회 등 용자기업 가동실태 조사

### □ 용자승인 취소 및 자금 회수 조치 사항

-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및 목적 외 사용한 경우
-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한 이행촉구, 시정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
- 세금 체납, 부도 등으로 강제집행, 파산, 회사정리 개시 또는 경매 절차 개시의 통지를 받은 경우
- 휴·폐업중인 자로서 계획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
- 용자 목적 사업의 주 소재지가 경상북도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
- 자금 지원 시설을 판매 또는 임대한 경우(규모 관계없이)

## 3 향후 일정

- ~ '22. 12. 31. : '23년 계획 공고 및 시·군, 유관기관 홍보
- '23. 1. 1. ~ : 사업 시행(자금 소진 시까지)